

대구예술대학교 교무위원회규정

(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장에 의거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예술대학교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속, 부설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성원 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8.2)

제3조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총장, 교무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의결된 사항은 소관 부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안에 따라 심의한다.

1. 대학,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조 (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처 및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